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86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서지영·강선영·김승수

이헌승 • 박성훈 • 박덕흠

서천호 • 권성동 • 김소희

최수진 · 김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발달에만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임.

하지만, 해당 제도의 경직된 시행으로 우수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되어 해당 학생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실력 중심의 경쟁이라는 스포츠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육 분야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도 형평에 맞 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참가를 반드 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 임(안 제11조제1항). 법률 제 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조제3호에"를 "제2조에"로, "고 등학교"를 "중학교·고등학교"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	
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u>허용</u>	허용하
<u>하여서는 아니 된다</u> . 다만,	<u>지 아니할 수 있다</u>
「초·중등교육법」 <u>제2조제3</u>	<u>제2조에</u>
<u>호에</u> 따른 <u>고등학교</u> 또는 이에	중학교·고등학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에는 그 참가를 <u>허용할 수 있</u>	<u>허용하여야 한다</u> .
<u>다</u>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